제874회 신설·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1	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(해양경찰청)	1.면제교육기관 등 지정시 인적기준 및 시설기준 강화(강화) ○ 국가업무 대행기관의 공신력,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각 기관에 종사하는 강사자격 제한기준 신설(공통) ○ 기관별 설치해야 하는 입간판의 표준 양식 신설(공통) ○ 교육생의 안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인명구조장비의 의무 비치수량 상향(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, 안 제12조, 별표 6) ▶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, 제16조, 제18조	1.중요
2	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(해양경찰청)	1.야간운항장비 세부기준(신설) ○ 야간운항시 갖추어야 할 장비(10종)의 세부기준 신설(별표 5 신설) ▶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29조 2.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(신설) ○ 시행규칙 제32조 단서에 따른 "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, 윈드서핑, 패들보드 또는 카이트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"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신설 ▶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8조	1.비중요 2.비중요 3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		3.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(신설) ㅇ 보험회사등이 등록관청(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)에 의무보험 가입등과 관련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시기, 내용, 방법을 규정 ▶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0조	
3	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2619)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전지시스템 잠금 기능 추가(강화) ㅇ 국제표준 부합화(Ed.1.0 -> Ed.2.0)에 따른 전자시스템 잠금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추가 ▶ 전기용품 안전기준(KC 62619) 제5조의8	1.비중요
4	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(산업통상자원부)	1.석유정제업자의 정보공개, 보고 의무확대(강화) ㅇ 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·월 단위 지역별 판매량, 판매단가 등을 보고내용에 추가 ㅇ 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별, 지역별 공급가격 공개 ▶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2	1.중요
5	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(인사혁신처)	1.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대상기관 지정기준 이원화(강화) ㅇ 현행 자본금 10억원 및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기준을 유지하며,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면서, 연간 외형거래액이 1,0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기준을 이원화 ▶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3조	1.비중요

no.	법령명	규제내용	결과
6	안전보건교육규정 개정안 (고용노동부)	1. 인터넷 원격교육, 비대면 실시간 교육기준(강화) ㅇ 프레임, 원고지 또는 동영상 등 학습 분량에 대한 다양한 기준을 동영상으로 일원화하고 전산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기준 완화 및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등 교육평가에 대한 기준 구체화 ㅇ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(모바일 원격교육)의 형태로 교육하는 경우, 작업 또는 운전 중 교육 수강을 제한하거나 제한하는 기능 또는 장치를 갖추는 등 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 조치를 규정 ㅇ 비대면 실시간교육을 도입하면서 플랫폼, 교육인원 등 기준을 규정 ▶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 2 .교육기관 운영 기준 강화(강화) ㅇ 교육기관 운영 시 교육 실시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, 실적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– 안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화교육과정의 경우에도 교육 실시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 – 직무교육기관이 매년 연간 교육일정을 직무교육센터에 직접 등록하도록 규정(現 공단이 취합하여 직무교육센터에 게시) – 직무교육기관이 매월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공단에 제출하도록 규정(現 매년) ㅇ 전문화교육과정에 사용할 교재의 경우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▶ 안전보건교육규정 전체	1.비중요 2.비중요